

기획

혐오 표현으로 얼룩진 사회, 대학의 역할은?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Scen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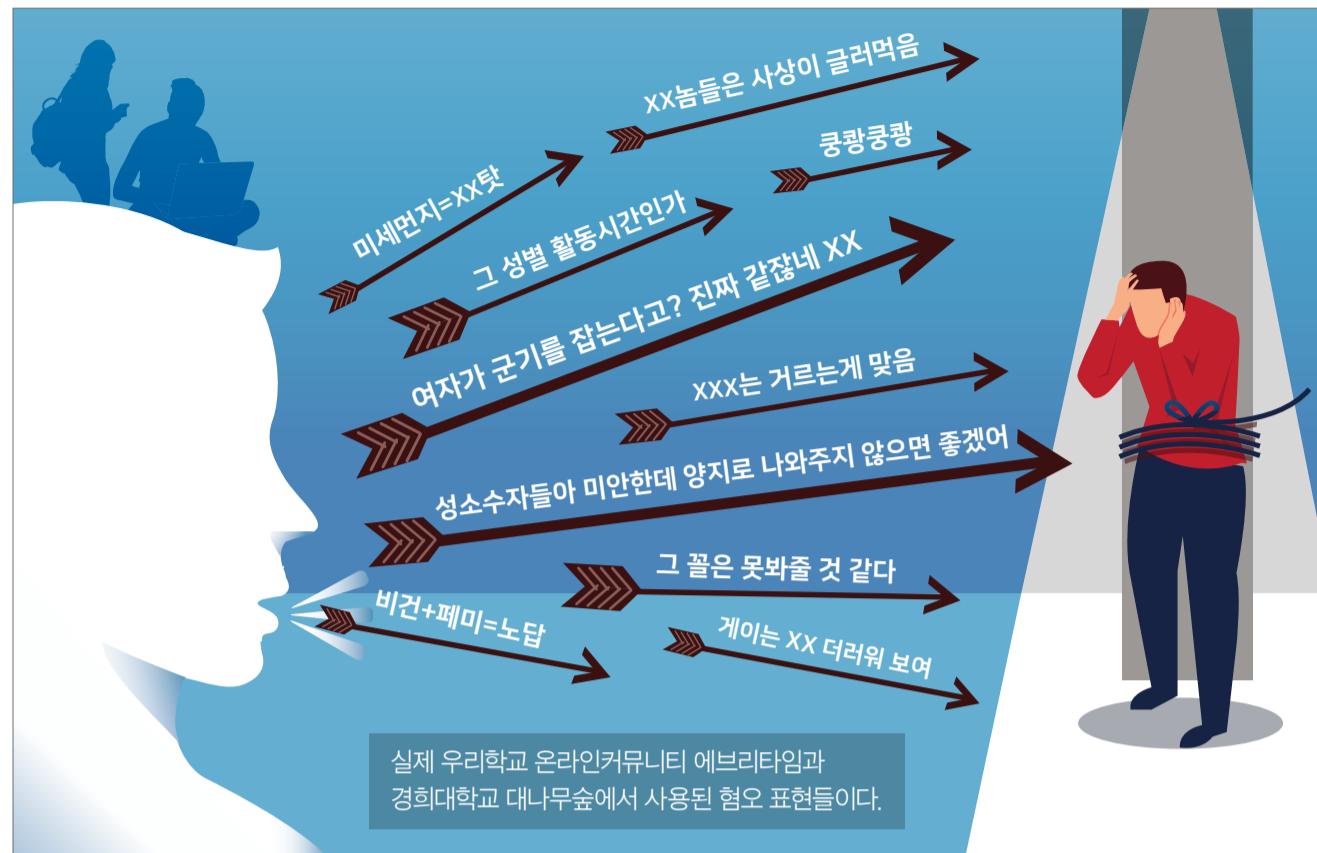
저는 에브리타임에서 ‘고니’(각주: 고정 닉네임의 준말. 커뮤니티에서는 익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끔씩 저를 욕하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내용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사실과 다르게 외전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처음에는 해명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맞대응하고 있는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때의 소문들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사실처럼 규정됐어요. 이젠 그냥 그려려니 해요.

Scene#2.

학과의 군기 문화를 고발했었던 대자보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저희 학과에서는 학과 규칙을 개정하기도 하고, 구성원끼리 합의도 하면서 군기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자부해요. 최근에 저희 학과를 특정해서 욕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댓글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제게 돌아오는 답은 ‘여자가 군기를 잡더라. 같잖다’와 같은 근거도 없고 자극적인 비난이었어요.

우리학교의 ‘에브리타임’, ‘경희대학교 대나무숲’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혐오 표현이 사용되고 있 었다.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의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시물에는 “살면서 정상적인 중국인을 본 적이 없다”, “XX인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라는 혐오성 댓글이 달렸다.

이외에도 혐오 표현의 대상은 개인, 단체, 소수자, 학과 등 다양했다. ‘민주



언론시민연합’에서 온라인 악성 댓글 문화를 주제로 연재했던 송경재(인류 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혐오 표현을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라며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혐오 정서가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디지털 주홍글씨가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의 혐오 정서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번져간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 교수는 혐오 정서가 증폭되는 현상에 대해 “나도 따라해야지”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해가 쉽고 자극적인 혐오 정서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악성 댓글을 다는 다수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혐오 정서가 심화되는 이유를 글로만 의사 전달이 가능하단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과사회복지연구소 박 소장은

“현실에서는 몸짓, 표정, 목소리와 같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할 수 있다”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텍스트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정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정서는 심화되고 있다. 다수가 소수를 압도하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논문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 인종적 위계의 하층에 배치된 외국인들」(양혜우, 『비교문화연구 제56권』, 2019.09)에서는 ‘예멘 난민 사태’에 비추어 “단편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진실처럼 가장하여 저마다의 이유로 혐오 정서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소수자의 억압을 묵인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때 인류가 어떤 비극을 저지를 수 있는지는 역사에서도 확인

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댓글 실명제와, 언론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총 23,13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각에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권과사회복지연구소 박 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온라인 댓글 문화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댓글이 누군가의 존엄과 정체성을 훼손해버리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보장해줄 수 없는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만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새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혐오 표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대학에서의 담론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 교수는 “커뮤니티 사용 주체인 학생사회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합의 결과를 수렴해서 게시판 운영원칙을 정립하고, 자발적인 학생 운동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에서도 혐오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사회의 움직임(우리학교에서 처음 열린 인권주간,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대학주보, 2019.09.29.)이 있었다. 인권주간 행사를 기획한 이현주(국어국문학 2018) 씨는 기획의도에 대해 “학생사회는 혐오 정서에서 시작되는 문제를 직시하고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 표현에 맞서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권과사회복지연구소 박 소장은 “온라인에서 혐오 정서가 서슴없이 표현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침묵하고 방조해 왔던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사안에 대해 다수가 목소리를 보태서 지적해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2020년 1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일정

구분	대상	현장실습 신청기간	실습기간
2019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기관모집	1차 : 2019. 9. 2.(월) ~ 11. 12.(화)	2019. 12. 23.(월)
	학생모집	1차 : 2019. 11. 13.(수) ~ 11. 20.(수)	2020. 2. 21.(금)
2020년 1학기 장기현장실습	기관모집	2019년 12월 중순 ~ 2020년 2월 초순	2020년 3월
	학생모집	2020년 1월 말 ~ 2월 중순	8월 중

- 현장실습 근무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4주 160시간이상 (법정공휴일 및 침정권행사 일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가자격의 협의 하에 근무 시작일의 조정은 가능함. 단 근무기준 (4주 이상)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으로 인해 공지된 실습 종료일 4주 전까지 실습을 종료해야 함(해당 실습 공고문 확인 필요)



현장실습 참가학생 실습지원 사항

- 경희대학교 3~4학년 재학생(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 가능. 단,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생 불가)
-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 : 현장실습 이수 시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과 지원금 부여

구분	학교→학생		실습기관→학생	
	학점(이수 시)	지원금(이수 시)	학점	지원금
단기현장실습	4주 이상 8주 이상	3학점 6학점	40만원/4주 기준 80만원/8주 기준	현장실습 참여 학생 1인 40만원(8주 기준) 이상 지원금 지급 권장
장기현장실습	8주 이상	최대 15학점 최대 240만원/24주 기준	최대 15학점 최대 240만원/24주 기준	

- 단기현장실습으로 6학점을 기록한 학생이 8주 현장실습을 추가 신청한 경우, 학점은 3학점만 인정하고 지원금은 8주 기준으로 지급



2017년 6월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주요내용

- 제6조(현장실습 운영기간)
 ① 현장실습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제1 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식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6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9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세부 추진일정

순번	구분	내용	기입	대학	학생
1	실습기관 등록 및 참여신청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등록 - 현장실습 전형 부서 등록 - 참여신청서 작성 - 운영계획서 내용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모집분야 고려하여 모집전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radio"/>		
2	학생신청	현장실습 등록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intern.khu.ac.kr 접속 - 미적사, 저기소에서 작성 부서 등록 - 실습기관, 직무, 소재지 등을 조작하여 신청 * 서류전시 등 외지인 경우 해당 부서 신청 * 1개월 기간 내로 신청 * ① 대학 등록 및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② 인증서 및 동종업보증 및 계약등록 요망 [별첨2]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용 안내 안내		1차 11.13~11.20. 2차 12.2~12.6.	
3	학생선팔	서류심사 : 대학학과에서 학생 서류심사 기관 최종선팔 - 서류전시 및 면접을 통해 심사 - 홈페이지에서 신청학생 대상으로 자체적인 학생 평가 * ① 학생 평가 ② 학생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 평가		1차 11.25~11.29. 2차 12.9~12.13.	
4	협약체결	온라인으로 체결 - 실습처설정 7일 전 결료 * ③ 학교 세부설정이나 보고서 제작 가능	<input type="radio"/>		
5	상해보험 가입	상해보험이 가입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실습 시작 전
6	사전교육	실습생 모집전형 이수 * 미수수 시 학점교체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단과대학 사전교육 이수 학생도 모래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실습 시작일 7일 전
7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구루7주 : 1일 8시간, 주 5일 4주 연속 운영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유동 및 향정관행사 일정은 현장실습 실적 인정일수에서 제외됨		2019.12.23~2020.2.21.	
8	실습기간 병음	현장실습 지도교수 기업 병음			실습기간 중 실습종료 후 2일 미내
9	증명文书 입력	홈페이지에서 작성(증명 종료 후 2일 미내) ▶ 학생·주간보고서, 출장보고서, 설문조사 [별첨2]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용 안내 ▶ 설문조사 : 설문설명서, 설문지 * 기관 평점 : 70점 미만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10	학점 인정 및 지원금지급	학점 인정 및 지원금지급 * 최초 제출일 기준 약 1개월 * 최초 지급일은 1월 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